

한국의 FTA 10년 평가와 향후 정책방향

김영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통상실
지역무역협정팀 연구위원
ygkim@kiep.go.kr

금혜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통상실
지역무역협정팀 전문연구원
hykeum@kiep.go.kr

유새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통상실
지역무역협정팀 연구원
sbyoo@kiep.go.kr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2014년은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체결한 한·칠레 FTA가 발효된 지 만 10년이 되는 해로, 그동안의 성과를 다각도에서 살펴봄으로써 향후 정책 방향을 설정할 시점임.
 - 10년 동안 우리나라는 적극적인 FTA추진을 통해 칠레를 포함하여 총 9건의 FTA를 발효시켰고 호주 등과 5건의 FTA를 타결함.
- 칠레와의 FTA협상을 계기로 본격화된 FTA정책은 2003년도에 만들어진 FTA추진 로드맵에 기반하고 있음.
 - 지난 10년을 FTA추진 로드맵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어느 정도 성공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음.
 - 외형적 측면에서 보면 우리나라가 다소 늦게 FTA대열에 합류했음에도 동시다발적 추진전략으로 2014년 11월 말 기준 9건의 FTA를 발효시켰고 5건을 타결하는 등 단기간에 많은 국가들과 성공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함.
 - 내용의 측면에서는 대부분의 FTA에서 90% 이상의 높은 자유화율을 달성했으며, 미국 및 EU 등 선진국과 더불어 ASEAN와 같은 개도국과의 FTA에서도 서비스와 투자를 포함한 포괄적이고 수준 높은 FTA를 체결한 바 있음.
 - 다만 FTA 추진과정에 있어 대내협상이 충분하지 못했다는 지적과 함께 아직까지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FTA를 충분히 활용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에서 국민적 공감대 확산과 내실화를 위한 대책이 필요한 실정임.
- FTA는 체결 자체나 추진 로드맵의 원칙에 충실했다는 사실보다는 FTA라는 정책수단을 통해 달성하고자 했던 경제정책적 목표 달성여부가 중요한 평가 기준임
 - 본 연구에서는 FTA협정이 발효됨으로써 우리 경제에 발현된 경제적 성과에 초점을 맞춰 분석하고 정책적 목표 달성여부를 점검하였음.
 - 본 연구의 분석대상 범위는 FTA 평가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보완하고 차별적인 기여를 창출할 수 있는 분야에 집중함.
 - 첫째 본 연구에서는 동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주요국들이 체결한 FTA뿐 아니라 그 포괄범위를 고려하여 FTA 네트워크에 대해 평가하였음.
 - 둘째 주요 연구들이 주로 국가수준에서의 양자 교역에 집중한 반면, 본 연구에서는 산업 및 기업 수준에서의 성과를 살펴봄으로써 그동안 체결한 FTA의 영향이 산업별로 그리고 기업규모별로 어

떻게 상이한 지를 분석하였음.

- 셋째 본 연구에서는 처음으로 FTA가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조망함으로써 FTA가 총교역뿐 아니라 우리나라로 귀속되는 부가가치에 미치는 영향도 분석하였음.
- 넷째 FTA로 인한 양자 수출입 증대가 산업 연관관계와 제3국과의 교역관계를 통해 우리 경제에 파급되는 총체적인 영향을 분석하였으며, 수출뿐 아니라 수입의 긍정적인 영향을 조망하였음.
- 다섯째 본 연구에서는 양자 수출입 액수뿐 아니라 품목 수와 경쟁도, 성과의 분배 등에 대한 고찰을 포함하고 있음.
- 마지막으로 여섯째 미국, EU 등 거대 선진 경제권과 FTA를 추진하면서 우리 정부가 강조했던 제도선진화에 대한 평가를 담고자 FTA 계기 국내법 개정 현황을 체계화하여 파악하고 유형화했다는 점 역시 본 연구의 차별적인 부가가치라 할 수 있음.
- 본 연구의 기여는 FTA정책의 경제적 성과를 다양한 각도에서 살펴보기 위한 방법론을 제시하고 적용했다는 점이나, 동시에 자료나 분석방법론의 제한으로 분석 대상에 따라서는 분석 결과를 FTA의 성과로 해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불분명한 경우가 존재하므로 해석상의 한계가 있음.

2. 조사 및 분석 결과

가. FTA네트워크

- 양자 FTA의 폭발적 증가 속에서 우리나라가 구축한 FTA 네트워크를 평가하고, 향후 양자 FTA를 넘어 지역경제통합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는 상황 속에서 우리의 통상정책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소셜 네트워크 분석(Social Network Analysis) 방법론을 활용하여 동아시아에서의 우리 위치를 점검함.
 - FTA 포괄범위를 고려하기 위하여 동아시아개발은행의 아시아 지역통합센터(Asia Regional Integration Center)가 제공하는 동아시아 FTA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2004년 이전과 2005~13년으로 구분하고 각 기간 동아시아 FTA국가들이 체결한 FTA를 정리하였으며, 각국이 동아시아 FTA네트워크에서 얼마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연결중심성(Degree centrality)과 매개중심성(Betweenness centrality)을 측정함.
 - FTA 포괄범위를 가중치로 활용하기 위해 FTA별 협정문의 내용을 ① 서비스 ② 투자 ③ 무역원활화(세관협력 등) ④ 정부조달 ⑤ 경쟁정책 ⑥ 지식재산권 ⑦ 인력이동 ⑧ 노동 및 환경 ⑨ 기술협력 ⑩ 제도 메커니즘으로 구분한 뒤 각 내용별 포함수준에 따라 0~1의 값을 부여한 뒤 이를 합산하여 포괄범위의 정량지표로 활용

표 1. 주요국의 중심성 지표(협정문 포괄범위 고려)

국가	2004년 이전		2005~13년	
	연결중심성	매개중심성	연결중심성	매개중심성
호주	0.01	0.00	0.16	0.09
일본	0.04	0.00	0.55	0.21
중국	0.01	0.01	0.19	0.00
한국	0.01	0.00	0.38	0.13
싱가포르	0.22	0.06	0.06	0.17
아세안			0.09	0.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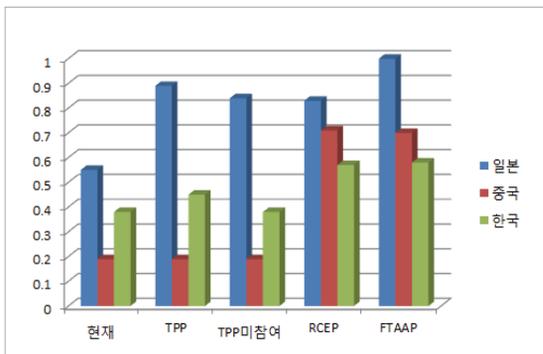
출처: 저자 작성.

● 우리나라 FTA네트워크는 건수를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도 지난 10년간 괄목한 만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며 특히 상대국의 경제규모와 협정문의 포괄범위를 가중치로 평가할 경우 연결중심성으로 측정된 성과는 더 큰 것으로 나타남.

- 따라서 주요 시장에 대한 접근성이라는 측면에서는 포괄적인 FTA를 추진함으로써 우리 기업이 해외시장에서 공정한 경쟁환경 속에서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성공적인 발판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됨.
- 다만 동아시아 지역으로 국한할 경우 매개중심성은 일본이나 아세안보다 낮은 것으로 분석되어 향후 동아시아 지역경제통합 논의과정 매개자로서의 역할은 다소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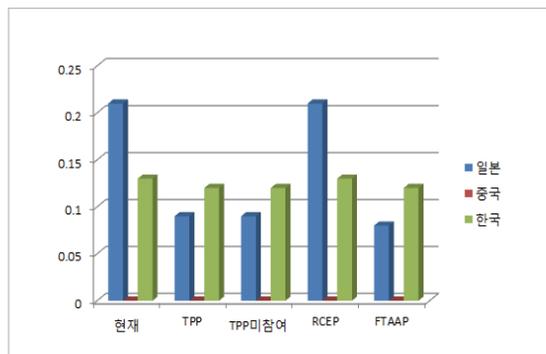
● 현재까지 동아시아 지역에 구축되어 있는 FTA 통계를 토대로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RCEP(역내포괄적 동반자협정), FTAAP(아시아태평양 자유무역지대)를 반영하여 우리나라의 중심성 변화를 예측함.

그림 1. 협상별 한·중·일 연결중심성



주: 가중치를 고려한 경우임.
출처: 저자 작성.

그림 2. 협상별 한·중·일 매개중심성



출처: 저자 작성.

- 분석 결과 첫째 그동안 체결한 양자 FTA가 많은 우리로서는 지역경제통합에 참여함으로써 기대할 수 있는 중심성의 변화가 크지 않으므로 지역경제통합 논의에 들어가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식별할 수 있도록 이에 초점을 맞춰 협상전략을 구축해야 함.
- 둘째는 우리의 지역경제통합에의 참여여부와 관계없이 일본과 중국이 수혜자가 된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동안 누려왔던 선점효과의 소실을 방어하기 위해서라도 신흥국들과의 FTA 네트워크에 적극 참여해야 함.
- 가중치를 고려하여 매개중심성을 계산해보면, 중국의 영향력은 미미해진 반면 TPP나 FTAAP에서의 한국의 영향력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고 일본은 RCEP에서 매개자 역할을 수행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나 우리와 플랫폼 경쟁을 벌일 상대국은 중국이 아니라 일본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됨.
- 따라서 경제협력을 중시하는 RCEP협상에서 우리가 수행 가능한 매개자 역할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일본과 중국에 비해 우리나라에 적합한 역할을 식별해야 함.
- 나아가 우리나라는 FTAAP를 염두에 두고 TPP와 RCEP에서 각각 취할 역할에 대해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음.

나. 기업수준 상품 교역

- 기업의 수출품목 다변화는 FTA체결 이후 지속적으로 개선되었으나,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과 중견기업에서 그 성과가 크게 나타남.
 - 2007~13년 기간 대기업의 대세계 수출품목은 3,862개에서 5,223개, 중견기업의 수출품목 수의 경우 4,692개에서 5,926개 품목으로 각각 35.2%, 26.3% 씩 대폭 증가하였으나, 중소기업의 경우 총 수출품목 수는 2007년에 8,577개 품목에서 2013년에 8,912개 품목으로 약 3.9%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음.
 - 이는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경우 2007~13년 기간에 새로운 품목의 신규수출이 이루어졌으나 중소기업의 경우 수출품목 다변화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음.

표 2. 우리나라 기업유형별 수출품목 수(KHS 10단위 기준)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대기업	3,862	4,227	4,390	4,684	4,832	5,116	5,223
중견기업	4,692	4,842	4,943	4,836	4,790	5,753	5,926
중소기업	8,577	8,663	8,753	8,901	8,926	9,066	8,912

자료: 관세무역개발연구원 자료를 기초로 저자 작성.

● 전반적으로 FTA 체결상대국에 대한 기업유형별 수출품목 수에서 우리나라는 전체 기업유형별 수출품목 수 증가를 상회하는 실적을 기록하여 FTA가 품목다변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음

- 칠레의 경우 우리나라 대기업을 수출품목은 2007~13년 기간에 268개 품목에서 606개 품목으로 126.1% 증가하였고,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의 수출품목 수도 각각 74.3%와 33.5% 증가하였으며, EFTA와 ASEAN에 대한 수출품목 수도 전체 수출품목 증가를 크게 상회함.

- 반면 2010년 이후 발효된 한·인도 CEPA나 한·EU FTA 및 한·미 FTA의 경우 기존에 칠레나 ASEAN과 같이 눈에 띄는 수출품목 비중의 증가가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일부 유형별로 비중이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 이들 FTA에서 기존 수출품목 다변화의 효과가 크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하나 글로벌 위기 요소에 대한 통제 필요성도 제기됨.

표 3. FTA 체결상대국에 대한 기업유형별 수출품목 비중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칠레							
대기업	6.9%	9.7%	10.4%	10.3%	12.1%	11.9%	11.6%
중견기업	6.0%	7.2%	6.5%	6.2%	6.2%	7.8%	8.2%
중소기업	12.0%	12.8%	13.5%	14.7%	15.4%	15.5%	15.4%
EFTA							
대기업	5.2%	6.2%	6.6%	7.3%	6.4%	6.0%	6.6%
중견기업	5.2%	4.2%	5.4%	5.2%	6.4%	5.9%	6.5%
중소기업	15.1%	15.0%	15.1%	15.6%	16.2%	15.5%	16.6%
ASEAN							
대기업	46.9%	48.7%	47.2%	47.7%	48.9%	51.1%	53.0%
중견기업	43.6%	46.8%	49.6%	53.4%	52.0%	56.8%	57.9%
중소기업	66.6%	68.3%	68.9%	70.8%	70.8%	70.7%	71.2%
인도							
대기업			20.5%	22.8%	25.4%	24.9%	25.8%
중견기업			19.6%	18.3%	19.7%	22.0%	21.3%
중소기업			32.4%	34.2%	34.9%	33.9%	32.3%
EU							
대기업				41.5%	40.0%	41.9%	40.7%
중견기업				35.8%	38.4%	41.1%	41.5%
중소기업				53.0%	53.8%	52.4%	51.8%
미국							
대기업					37.4%	38.3%	39.0%
중견기업					37.9%	43.1%	41.6%
중소기업					55.8%	56.7%	56.6%

주: 기업분류가 되지 않은 '기타'기업은 제외함, 빈 셀은 각 상대국과의 FTA가 발효되기 이전임.

자료: 관세무역개발연구원 자료를 기초로 저자 작성.

- 수출비중 증가의 관점에서 기업규모별 효과를 분석한 결과, 대기업의 경우 FTA 이후 상대국으로의 수출이 눈에 띄게 증가한 반면, 중소기업의 수출비중은 EFTA의 경우 2007년 20.0%에서 2013년에는 7.5%로 감소하였고 ASEAN으로의 중소기업 수출비중은 25.8%에서 20.5%로 감소해 여전히 중소기업은 FTA 활용에 한계가 있음을 보여줌.

표 4. 기업유형별 수출비중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칠레							
대기업	83.5%	81.5%	82.8%	77.5%	65.4%	70.4%	71.6%
중견기업	8.6%	8.4%	7.7%	8.9%	15.9%	14.1%	13.5%
중소기업	7.9%	10.0%	9.4%	13.5%	17.9%	15.5%	13.8%
EFTA							
대기업	66.0%	82.3%	86.9%	84.9%	78.4%	81.3%	89.1%
중견기업	13.3%	3.9%	3.1%	7.6%	4.1%	5.4%	3.0%
중소기업	20.0%	13.6%	9.7%	7.3%	16.7%	13.3%	7.5%
ASEAN(CLMV)							
대기업	31.0%	35.4%	34.1%	42.4%	45.4%	49.1%	43.7%
중견기업	19.3%	17.9%	13.8%	10.6%	14.0%	18.9%	22.9%
중소기업	49.5%	46.5%	52.0%	46.8%	38.2%	31.8%	30.7%
ASEAN(ASEAN 6)							
대기업	48.0%	52.7%	48.1%	52.9%	49.4%	66.8%	63.4%
중견기업	30.5%	26.7%	31.6%	27.0%	31.5%	16.9%	17.3%
중소기업	21.2%	20.4%	20.0%	19.8%	18.2%	16.3%	16.7%
ASEAN 총계							
대기업	45.2%	49.8%	45.4%	50.9%	48.6%	62.8%	58.0%
중견기업	28.6%	25.2%	28.2%	23.8%	27.9%	17.3%	18.9%
중소기업	25.8%	24.8%	26.2%	25.1%	22.3%	19.8%	20.5%

주: 기업분류가 되지 않은 '기타' 기업은 제외함.
 자료: 관세무역개발연구원 자료를 기초로 저자 작성.

다. 산업별 교역 효과

- FTA가 우리나라의 산업별 교역에 미친 영향은 중력모형(gravity model)을 이용하여 분석함.
 - 실증분석 모형을 추정하기 위하여 2002~12년까지 우리나라 및 우리나라와의 FTA 발효국(45개국)과 244개 교역상대국 간의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국가간 연도별 수입액, 각국의 연도별 GDP와 1인당 GDP, 지리적 거리, FTA의 체결 여부, 관세율 등을 설명변수에 포함함.

- 산업별 수입효과 분석 결과, 기발효 FTA는 가공식품, 섬유·직물, 철강, 기타 제조업 분야의 수입 증가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으며, 철강 산업을 제외하면 모두 노동집약적인 경공업임.
- 산업별 수출효과 분석 결과, 육류 및 낙농, 가공식품, 채취업, 화학·고무·플라스틱, 철강, 비철금속, 기타 제조업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출증가가 관측됨.
 - 주로 우리나라 주력 수출품목인 화학·고무·플라스틱 관련 제품의 수출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되며, 자동차, 전자, 기계품목에 대해서도 상대국의 시장 환경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FTA 발효 이후 수출규모가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음.

라. 부가가치 교역

- 분석을 위해 앞서 전술한 중력모형이 이용되었으며, 우리나라와 OECD 회원국을 비롯한 주요 비 OECD 회원국(전체 54개국) 사이의 부가가치 교역 자료는 OECD Trade in Value Added(TiVA) 데이터베이스(1995, 2000, 2005, 2008, 2009년 가용)에서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포함한 18개 부분자료를 활용함.
 - 2009년 자료가 가장 최신 부가가치 교역 자료인 관계로 개별 FTA 가운데 2007년 6월 발효된 한·ASEAN FTA까지만 분석대상에 포함시켰음.
- 한·칠레 FTA는 양국간의 부가가치 교역 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한·싱가포르 FTA는 싱가포르에 대한 우리나라의 부가가치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부가가치 수입 증가에는 별다른 영향을 가져오지 못한 것으로 분석됨.
 - 우리나라가 칠레에게 주로 수출하는 품목은 석유 정제품(경유 및 휘발유), 자동차, 자동차부품 등으로 이는 우리나라의 대세계 주력 수출품목이기도 한만큼 국내부가가치 비중이 높은 편이고, 우리나라가 칠레로부터 주로 수입하는 원자재(구리, 동광, 펄프) 역시 전체 부가가치에서 생산지인 칠레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 품목임.
 - 우리나라의 대상가포르 주요 수출품목은 석유 정제품, 선박, 집적회로반도체 등이 있으나 반도체는 싱가포르로부터의 수입도 많은 품목이므로 부가가치 수출 증가분을 상쇄하는 측면이 있음.
- 한편 한·EFTA FTA와 한·ASEAN FTA는 우리나라의 부가가치 교역 증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었음.
 - ASEAN 회원국에 따라 이 FTA 상품협정 발효일이 상이하고 서비스협정은 개별적으로 발효되었기

때문에¹⁾ 현재의 분석 자료로 부가가치 교역에 대한 한·ASEAN FTA의 포괄적 효과를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함.

마. 품목 다변화 및 집중도

- 기발효 FTA가 상대국에 대한 우리나라의 교역품목 수에 미친 효과를 추정된 결과, 칠레, 싱가포르 및 ASEAN과의 FTA는 해당국가에 대한 우리나라의 수출품목과 수입품목 수를 증가시키는 데 기여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한·EFTA FTA, 한·인도 FTA 및 한·미 FTA는 통계적·경제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발견할 수 없었음.
- 기발효 FTA가 산업별 교역품목 수에 미친 효과를 추정된 결과, 쌀과 수산업을 제외한 모든 산업의 수출품목 수 증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으며, 쌀, 육류 및 낙농, 자동차를 제외한 모든 산업의 수입품목 수를 증가시킨 것으로 추정되었음.
- 허핀달 지수를 이용하여 교역품목 집중도를 측정한 결과, EFTA를 제외한 모든 FTA상대국에서 수입품목의 집중도는 크게 완화된 반면, 수출집중도의 경우 인도, EU, 미국에서는 완화되었으나 칠레, 아세안, 페루, 터키 등에서는 오히려 강화되었음.
 - 상대국에 따라서는 FTA발효 이후 종전에 주로 수출하던 품목의 수출이 크게 증가하는 내연적 성장이 새로이 수출되기 시작한 품목의 교역액이 증가하는 외연적 성장보다 빠르게 발생했다는 것을 의미하며 동시에 내연적 성장을 이룬 품목들 중에서도 주력 수출품목의 성장세가 두드러졌다는 점을 알 수 있음.

바. 서비스 교역 및 투자

- 우리나라의 기발효 FTA는 양자간 서비스 교역규모의 증가에 기여하였으며, 특히 서비스 수입에 더욱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음.
 - 이와 같은 결과는 FTA 체결을 통해 교역장벽이 완화되면서 Mode 1(국경간 공급)²⁾ 형태의 서비스 수입이 늘어났고 컴퓨터·정보서비스 및 기타 비즈니스서비스 부문에서 교역이 크게 활발해졌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음.

1) 한·ASEAN FTA 상품협정 발효일을 살펴보면 한국,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 미얀마는 2007년 6월, 필리핀은 2008년 1월, 브루나이는 2008년 7월, 라오스는 2008년 10월, 캄보디아는 2008년 11월, 태국은 2010년 1월이며, 서비스협정은 2007년 11월에 발효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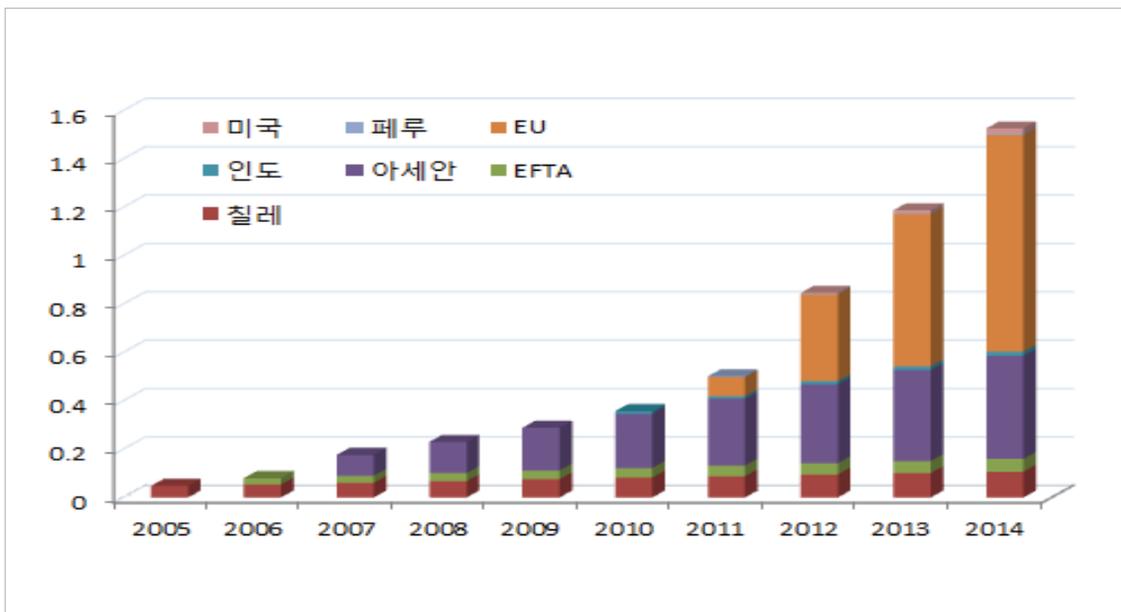
2) 일반적으로 FTA 체결국들은 상대국에게 시장접근 의무, 내국민대우 의무, 최혜국대우 의무를 부여하여 Mode 1(국경간 공급) 형태의 교역을 활성화시킨다.

- FTA의 부문별 서비스 수출과 수입에 미친 효과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FTA는 특히 운송서비스, 통신서비스, 보험서비스, 컴퓨터·정보서비스, 기타 비즈니스서비스의 수출입 증가를 가져왔음.
- 우리나라 기업들의 해외투자에 FTA가 미친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이중차분방식(Difference in Differences)을 적용한 결과, FTA가 외국인 투자에 미친 영향은 긍정적인 반면 인도를 제외하고는 미국, EU, ASEAN으로의 투자는 같은 기간 대세계 투자 성과에 못 미쳤음.
 - 제조업과 서비스업에 대한 투자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미국, EU, ASEAN의 경우 FTA의 제조업에 대한 투자 효과는 긍정적인 반면, 인도의 경우 FTA가 서비스업 투자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음.

사. 경제성장 및 소비자 후생

- 연산가능일반균형(CGЕ: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모형을 이용하여 FTA로 인한 양자교역이 우리나라의 대세계 교역에 미치는 효과와 경제전반적인 영향을 살펴보았음.
 - 2004년부터 1년 단위로 2014년까지 10년 기간을 분석대상으로 하였고, 분석 시나리오는 FTA를 통한 상품교역과 투자증가에 따른 영향에 우선 초점을 맞춰 구성하였음.
 - 각 FTA별 교역 및 투자로 인한 성장효과를 2014년까지의 누적치로 비교해 보면, EU가 0.897%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아세안과 칠레가 각각 0.426%와 0.11%의 추가성장을 견인한 것으로 분석됨.

그림 3. FTA별 경제성장 효과



자료: 저자 작성.

아. 산업별 기업별 이익 분배구조

- 기업수준 자료를 이용하여 지난 30여 년간 산업별 기업별 분배구조 변화를 통해 개방정책이 산업 및 기업의 분배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봄.
 - 한국신용평가정보(KIS: Korea Information Service)가 제공하는 상장기업, 코스닥기업 및 외부감사대상 기업을 상대로 1980년부터 2013년까지 한국표준산업분류(9차)의 중분류로 농림어업, 제조업, 서비스업을 포괄하는 자료를 구축
- 일련의 추세변화를 비교해보면, 개방이 진전될수록 국내에서 영업하는 내수기업들의 수익성은 악화되는 추세를 보이는 반면 수출기업의 이익률은 개선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으나, 수출기업의 경우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은 대외충격에 영향을 더 많이 받는 등 변동성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 기간 분배구조 변화를 감안하면 내수기업의 분배구조 개선은 전반적인 수익성 악화로 인한 현상이며 이런 점에서 긍정적인 효과는 아니며, 같은 이유로 수출기업의 분배구조 악화는 대외충격이 강한 기업과 대기업이 수익을 더 많이 가져가면서 발생하는 현상으로 이해됨.
-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는 어떠한 분배구조 변화가 있었는지 알아보기 위해 전체 분배구조를 기업규모별로 살펴봄.
 - 매출액을 기준으로 분배구조 변화를 비교해보면, 최근 10년간 전체적으로는 다소간 지니계수가 낮아지는 모습을 보였는데 두 기업집단이 모두 유사한 추세를 보임.
 - 이를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계산한 결과도 비슷한 추이를 보이는데 2004년 이후 중소기업 집단에서는 다소간의 분배구조 악화 추세가 보이는 반면 대기업 집단에서는 안정적인 모습을 보임.
 - 결론적으로 기업의 규모가 커 대외충격이나 기회요인에 덜 민감한 대기업에 비해 개방정책이 중소기업에 미친 영향은 훨씬 컸다는 것을 나타내며, 수입시장이 개방되면서 내수시장을 목표로 하는 많은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새로운 수출시장에 뛰어들어 성장하는 중소기업들도 공존한다는 점을 시사함.
- 기업들 중에서 정상적인 영업이익을 얻고 있는 기업들만을 대상으로 전 산업과 함께 수출이 주로 이뤄지는 제조업을 구분하여 영업이익률과 수출여부 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제조업에 속한 중소기업은 대기업보다 영업이익률이 다소 낮았고, 수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내수 중소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영업이익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두 분석 결과를 비교해보면, 서비스업과 농수산업의 경우 내수 중소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성과가 좋고 제조업의 경우 수출 중소기업이 보다 높은 영업이익을 얻는 것으로 이해됨.

표 5. 중소기업 수출여부가 영업이익률에 미치는 영향(정상기업)

종속변수: 영업이익률	모형 1	모형 2	모형 3	모형 4	모형 5	모형 6
연구개발비/총매출액	0.000895*** (5.69e-05)	0.000906*** (5.63e-05)			0.000914*** (8.86e-05)	0.000912*** (8.86e-05)
중소기업 더미	0.0233*** (0.000628)	0.0261*** (0.000684)	0.0233*** (0.000628)	0.0261*** (0.000684)	-0.000642 (0.000659)	-0.00124* (0.000746)
중소기업 여부*수출여부	-0.00488*** (0.000645)	-0.0197*** (0.00114)	-0.00488*** (0.000645)	-0.0197*** (0.00114)	0.00228*** (0.000683)	0.00453*** (0.00119)
수출액/총매출액	0.00536*** (0.00124)		0.00535*** (0.00124)		-0.00240* (0.00129)	
수출여부		0.0169*** (0.00103)		0.0169*** (0.00103)		-0.00310*** (0.00106)
분석 산업	전 산업			제조업		
관측치 수	238,943	238,943	238,943	238,943	119,166	119,166

주: *** p<0.01, ** p<0.05, * p<0.1, ()안은 robust 표준오차임.

자료: 저자 작성.

자. 국내 제도 변화

● 한·미 FTA 체결에 따른 국내법의 개정(25개 법률)이 제도 선진화로 이어지는 경로를 크게 ‘한·미 간 규제 조화’(4건), ‘제도 간소화’(3건), ‘공기업 경영 투명성 제고’(3건), ‘고부가가치 서비스 시장 접근성 제고’(5건), ‘지식재산권 보호수준 강화’(9건), ‘제도 투명성 제고’(1건)의 6개 유형으로 나누어 분석함.

- ‘한·미 간 규제 조화’는 국내제품의 수출을 촉진하기 위한 상호 인증(MRA)과 같은 상호제도의 조화와 통일이므로, 이는 제도 선진화의 취지에 충분히 부합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음.
- ‘제도 간소화’에 포함되는 3건의 법률 중 「동의의결제」는 국내의 적용사례에 비추어볼 때 국회입법조사처가 지적했듯이 명실상부하게 선진적인 제도의 도입이라고 보기 곤란한 측면이 존재하는데, 「개별 소비세법」과 「지방세법」은 기존의 세제개편을 통한 미국기업 배려라는 측면이 다분히 있어 국내기업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제기될 우려가 있고 국민의 환경권을 침해하고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정책과도 상치되는 측면이 있어 이 또한 제도 선진화라고 평가하기 위해서는 향후 자동차시장의 친환경 자동차 개발 및 판매동향을 예의주시해가면서 신중한 판단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임.
- ‘공기업 경영 투명성 제고’ 유형에 포함되는 3건의 법률 개정은 금융공기업과 미국계 민간 금융기관 간에 공정한 경쟁여건 제공이라는 취지를 담은 것으로 이 자체로는 제도 선진화에 부합하는 것이나 내용 면에서도 국내 금융서비스시장의 제도 선진화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국내 공기업이

공공정책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경영상의 효율성과 투명성, 그리고 건전성을 제고하여 금융소비자의 후생증대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운용의 묘를 살려야 할 것임.

- ‘고부가가치 서비스 시장접근성 제고’에 포함되는 5건의 법률은 개정이 완료되는 시점이 2017년 이므로 다른 법률보다도 이에 대한 평가가 다소 시기상조임.
- ‘지식재산권 보호수준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은 가장 많은 9건이 포함되는바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는데 이 분야의 내용이 워낙 방대하여 「약사법」 개정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결국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가 특허권자의 보호와 제네릭 제약사의 경쟁촉진 간에 균형을 추구하고 있는지, 이 제도를 남용하여 특허영속화를 도모할 우려에 대한 예방책은 있는지, 후자를 위한 제도화 장치는 「제네릭 독점권」으로 충분한지로 집약되므로 2015년 3월 시행을 앞두고 이에 대한 각 계각층의 우려의 소리를 반영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
- ‘제도 투명성 제고’에 해당하는 행정절차법 개정은 이론의 여지가 거의 없는 선진적 제도라 할 수 있으며, 특정 제도 도입에 앞서 이와 관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 및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자 하는 취지는 제도 선진화에 부합함.

3. 향후 정책방향

가. 지역경제통합에의 대응

- 시사점은 첫째 우리나라가 이러한 경제통합 논의에 들어가서 얻을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는 점임.
 - 이미 양자 FTA를 통해서도 충분한 시장접근성을 확보했음에도 지역경제통합 논의에 들어가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식별하게 이에 초점을 맞춰 협상전략을 구축해야하며 이를 위해서는 우선 양자 FTA와 지역경제통합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 둘째 우리의 지역경제통합에의 참여여부와 관계없이 일본과 중국이 수혜자가 된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동안 누려왔던 선점효과의 소실을 방어하기 위해서라도 신흥국들과의 FTA네트워크에 적극 참여해야 함.
 - 동아시아 지역의 경제통합 논의에 활발하게 임하는 한편, 아프리카 등 FTA 신흥상대국을 발굴하는 데 관심을 기울여야 함.

- 셋째 지역경제통합 논의에서는 기체결 FTA를 초기 템플릿으로 하여 다수 참가국의 수요에 따라 하이브리드형으로 변형될 수 있다는 점에서 템플릿 경쟁에서의 우위확보가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해야 함.
- 넷째 RCEP에서는 이미 일본이 구축한 FTA네트워크의 영향력이 상당할 뿐 아니라 경제적으로 아세안회원국들에 대해 상당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협력을 중시하는 RCEP 협상에서 우리가 수행 가능한 매개자 역할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막연히 선진국과 개도국을 잇는 중간자 역할이라는 식의 접근보다는 구체적으로 경제협력의 형태로 개발경험을 전수함으로써 우리기업의 해외진출과 신흥개도국의 자립지원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추구할 수도 있을 것임.
- 마지막으로 우리는 현재 TPP 협상에는 참여하고 있지 않지만 모두가 주지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미 미국과 체결한 FTA 덕분에 TPP에서의 매개자 역할은 수월할 것으로 보이므로 결국 FTAAP를 염두에 두고 TPP와 RCEP에서 각각 취할 역할에 대해 검토해야 함.
 - 단기적으로는 TPP 협상동향에 주목하여 한·미FTA +요인에 대해 파악하는 한편, 보다 장기적으로 FTAAP를 목표로 우리나라가 할 수 있는 매개자 역할에 대해 고민이 필요함.

나. 기업의 FTA 활용

- 기업유형별 실적을 살펴보면 FTA로 인한 수출증가의 효과가 대기업에 두드러지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는 점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숙제로 남아 있음.
 - 평균 수출액 증가나 수출품목 다변화에서 대기업의 증가율은 중소기업을 상회하고 있으며, 해당 국가에 대한 중소기업의 수출비중은 FTA 발효 이후에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 상품협상에서 상대국에 대한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주요 수출품목이나 중소기업의 수출가능성이 높은 품목을 선정하여 이 품목들에 대한 관세 인하 및 철폐에 협상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함.
 - 특히 미국, EU, 호주, 캐나다 등 주요 선진국과의 FTA가 완료된 상황에서 향후 FTA는 상대적으로 관세율이 높은 개도국/후진국과의 협상이 주를 이룰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관세철폐에 따른 시장접근성 또한 높을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주요 중소기업 수출품목에 대한 빠른 관세인하나 즉각적인 관세철폐는 중소기업의 상대국 시장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기존 수출품목의 수출증가나 새로운 수출품목 발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또한 중소기업의 FTA 수출 활용에 대한 지원과 교육을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 한·미 FTA와 한·EU FTA가 발효되면서 정부의 중소기업에 대한 FTA 지원은 주로 원산지 증명이나 검증을 대비한 능력배양사업에 집중되어 있으나, FTA 체결국의 시장 상황과 전망에 대한 정보제공이나 체결국 구매자와 국내 중소기업을 직접적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FTA 활용능력을 배양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다. 역외가공 지역 조항

- 우리나라는 FTA 협상에서 개성공단에 대한 역외가공 허용을 포함시키기 위해 많은 기회비용을 지급했으나 실제로 개성공단에서 가공된 생산제품이 FTA 특혜관세를 신청한 사례는 전무한 상황임.

- 개성공단 역외가공 허용문제는 단순히 남북관계의 개선이나 한반도의 평화정착이라는 정치적 의미를 넘어, 실질적이고 실리적인 경제적 이득이 가능한 분야로 여겨지지만 협상과정에서 개성공단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결과에 합의함으로써 사문화되고 있는 실정

- 따라서 개성공단 역외가공에 대한 전반적인 제고가 요구됨.

- 실제로 개성공단 문제는 우리나라 협상단에 큰 부담이 되고 있으며 활용되지 않는다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이 지니는 정치·외교적, 그리고 국내적인 가치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점에서 일방적으로 개성공단 역외가공문제를 포기하기보다는 향후 추진되는 FTA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선택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즉 개성공단의 현 상황과 향후 계획을 고려하여 역외가공 인정품목을 소수의 품목이라도 실질적으로 생산되거나 생산이 예상되는 품목을 포함시키고, 실질적으로 개성공단 역외가공 생산품목의 수출가능성이 낮은 상대국과의 FTA에서는 과감하게 개성공단 역외가공조항을 포기할 필요가 있음.

- 동시에 국내적으로 개성공단 역외가공조항을 활용한 FTA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기업의 자발적인 활용의지를 높이기 위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함.

라. 산업별 맞춤형 정책

- 기발효 FTA의 자유화 수준이 높더라도 FTA 상대국들이 여타 국가와의 FTA를 다수 발효하게 되면 상대국 시장에서 우리 제품의 선점효과는 사라지고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게 되므로 해외진출기업들은 교역품목을 다변화하고 시장점유율을 유지하기 위하여 상대국 시장수요에 대하여 철저하게 분석해야 할 뿐만 아니라 연구개발투자를 확대하는 등의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함.

- 산업별 분석결과에 따르면, 양허 제외된 품목 외의 농수산물에 대하여 현재까지는 FTA에 따른 피해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관세철폐 유예기간이 적용되고 있기 때문이며, 보다 장기적인 시각에서 우리 농가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보완대책을 마련해야 함.
- 향후에는 원자재 및 중간재 생산을 주요 산업으로 삼고 있는 국가들과의 FTA를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현재 협상 진행 중인 FTA에서도 각 품목에 대하여 우리 제품과 경쟁관계인지 또는 원자재나 중간 재인지를 정확하게 분석하여 양허안을 작성할 수 있어야 함.
 - 우리나라가 글로벌 가치사슬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는 점 또한 원자재 및 중간재 생산국과 경제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이유가 될 수 있음.
- 향후 FTA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수입품목 다양화라는 측면을 강조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한편 식량 안보와 같이 특정 국가에 대한 수입의존도를 낮춰 안정적인 수입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의미와 함께 그동안 대내협상과정에서 고려되지 않았던 소비자의 입장에 대한 고려도 병행되어야 함을 의미함.
 - FTA 추진으로 상대국으로부터 다양한 품목이 수입되는 동시에 새로이 수입되는 품목이 전체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높아졌는데, 이는 국내 수입시장에서의 경쟁을 강화시키고 소비자의 선택 폭을 넓힘으로써 가격인하와 후생을 높였을 것이라는 점을 시사함.
- 또한 수출품목 수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집중도가 악화되었다는 점에서 다양한 품목에서의 수출경쟁력 확보가 시급함.
 - 주로 수출하는 품목들이 FTA를 통한 혜택의 대상이 된다는 점은 FTA를 통해 수출시장에 신규 진입하는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것을 의미하며 동시에 특정 품목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취약한 수출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의미임.
 - 전 세계 경쟁 환경은 날로 변화하고 있으며, FTA가 추진되면서 본격적인 수입시장개방으로 인해 그동안 국내시장을 목표로 영업을 영위하던 기업들도 전보다 치열해진 경쟁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므로 이러한 기업들에 대한 적절한 보완대책 수립은 반드시 필요하겠으나, 오히려 이를 계기로 해외시장 진출을 독려하기 위한 유인책 마련도 필요하다고 판단됨.
- 상품협정에 비해 서비스협정에 대한 정부의 정보제공이나 홍보 활동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FTA 서비스협정을 더욱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정부는 각 협정의 주요 내용 및 업데이트 사항을 해당 서비스 부문에 신속하게 전달해줄 수 있는 메커니즘을 구축해야 함.

- FTA를 통해 서비스 시장의 개방범위가 확대되면 서비스부문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해당 부문의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서비스부문의 생산성이 높아지면 이를 중간재로 투입하는 상품의 생산성 또는 부가가치도 함께 증가하게 됨.
- 단 FTA가 서비스 교역에 미치는 영향은 여러 단계와 경로를 거쳐 나타나게 되므로 정부는 좀 더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관점에서 대응방안을 준비해야 함.

마. 산업계와의 연계성

- 정부부처와 업계를 대표하는 협회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은 FTA 정책의 성패를 가름하는 중요한 요소라는 점에서 통상기능의 이관이 가져온 순기능이라고 평가할 만함.
 - 현재 제조업, 농수산식품, 중견·중소기업, 의약품·복지, 서비스 등 28개 업종별 분과로 구성된 「통상산업포럼」을 연 2회 개최하고 상시로 분과별 회의를 개최함으로써 산업계의 의견을 반영하는 제도를 운용 중임.
- 소통형 FTA 추진이 보다 확실하게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정부가 주도하는 협상방식의 변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우리나라와 같이 동시다발적으로 중요한 FTA 협상을 추진해나가는 경우 정부부처 역시 여유를 갖고 협상을 진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지만 소통의 대상이 되는 업계 역시 단기간에 협상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여 전달해야 하는 어려움이 존재하며 특히 대부분의 협상 진행상황이 전략노출을 피하기 위해 대외비로 취급되는 상황 속에서는 업계와의 원활한 소통과 협상전략 보완유지는 상충하는 것이 불가피함.
 - 일부에서는 체결된 FTA의 효율적 이행을 위해 정부가 관심과 자원을 쏟는 만큼 효과적인 협상이 될 수 있도록 협상단계에서도 그만큼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음.
- 근원적 배경에는 FTA 정책이 정부 주도로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이 깔려 있음.
- 첫째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략은 협상을 시작하기 전 그 타당성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업계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임.
 - 현재 운영하고 있는 통상산업포럼을 활용하되, 협상 전 단계부터 충분한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하며,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보다 시급한 중소기업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도 검토해야 함.

- 또한 현재와 같이 상품양허협상에 국한하여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을 확장하여 투자나 규범 등의 분야에 대해서도 소통의 통로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둘째 현재 협상과 관련한 업계의 의견이 주로 협회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협회가 존재하지 않는 업종이나 담당협회가 없는 품목의 경우 협상 대응전략 마련이 어렵다는 점에서 협상대상 분야와 협회 및 전문가집단을 고려하여 점검할 필요가 있음.

-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주로 사용하는 MTI 코드와 상품양허에 사용되는 HS 코드상 산업분류는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산업부 내 소관부처와 협회 간의 매칭이 완벽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가 존재하므로 기술 및 시대 변화에 부합하는 산업과 기술의 부침에 부합하는 글로벌 표준산업 분류 체계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서비스의 경우 분야가 다양한 만큼 소관부처도 다수라는 점에서 서비스 영역에서의 효율적 협상전략 수립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 셋째 전반적으로 FTA 성과가 긍정적임에도 여전히 기업 차원에서는 FTA 활용과정에 겪는 어려움이 많다는 점에서 활용도 제고를 위한 대책을 전반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음.

- 실제 중소기업들은 FTA 활용을 위한 인력 확보 및 내부시스템 구축이 어려워 FTA 활용의 측면에서도 기업규모별 양극화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FTA 활용도가 낮은 이유로 협정 자체에 대한 이해부족이 가장 많이 지적되었고, FTA별로 협정관세율이나 원산지규정 등을 정리하여 제공하는 웹사이트 등이 많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단편적인 정보제공보다는 보다 자세한 내용을 제공하는 플랫폼에 대한 요구가 높았음.

- 정보를 제공할 때는 활용하는 기업의 필요를 잘 파악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며, 해외의 활용사례나 상대국 정보를 제공함에서 중소기업의 눈높이에 맞추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임.

- 또한 여전히 높은 협정세율이나 한국과 상대국 사이의 상이한 해석, 수입통관절차 및 복잡한 행정요구사항 등도 활용률이 낮은 이유로 지적되었다는 점에서 FTA의 이행위원회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임.

바. 제도 선진화를 위한 이행 모니터링 강화

● 제도 선진화 관련 법률을 유형화하여 살펴본 결과, 각 유형마다 각기 다른 성격의 쟁점과 현안이 존재하고 있어 여기에서 제기될 만한 우려사항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이것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함.

- 현재 이행법률에 대한 모니터링의 총괄은 산업부에서 하고 있으나 각 법률의 주무부처는 상이해 이를 산업부에서 한정된 인력으로 상시 파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점에서 이행과정을 상시 모니터링하는 전담인력을 배치할 필요도 있음.
- 개방은 개혁의 촉매제일 뿐 우리 스스로의 자발적 제도 선진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해야 함.
 - 그러나 여기에는 기득권 세력의 반발이 걸림돌도 작용하기 마련이므로 정부가 애초 목표를 충분히 달성하지 못한 점에 대한 철저한 원인파악과 대책마련이 필요함.
- 개방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그 긍정적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FTA 시대에 상응하는 국내 대책의 선진화에도 노력을 경주해야 하며, 이는 무역조정지원제도와 같은 포괄적 법제뿐 아니라 제약 산업에서의 제네릭 제약사 도태 예방 등 특정 산업에 고유한 법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층위와 범주에서의 정책설계를 요함.
- 동아시아 경제통합과정에서 한국이 진정한 린치핀 역할을 수행하고자 한다면 개방과정에서 선진국 제도를 도입하는 것 못지않게 이를 우리 실정에 맞게 창의적으로 소화한 ‘한국적 선진제도’를 우리와 유사한 발전 경로를 보이는 아시아 주변국에 수출하고 이 나라들의 국내제도와의 조화를 이루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함.